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<b>담 당 자</b>	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668)	

**제 목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 
국무회의 통과**

◆ '20.3.3(화)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의결 → '20.4.1일부터 시행예정

➔ 펀드, 투자자문 · 일임,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

**I | 개 요**

- 2020.3.3(화)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- 동 법안은 '19.3월 발표된 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」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.
  - 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」은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, 투자자문 · 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,
  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·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.

**< 참고 > 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」 후속조치 추진현황**

- (자본시장법) 현재 법제처 심사대기 중 → 향후 법제처 심사 완료 후, 국무 ·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
- (자본시장법 시행령) 국무회의(3.3일) → '20.4.1일 시행 예정
- (금융투자업규정) 증선위(3.11일), 금융위(3.18일) 의결 후 '20.4.1일 시행 예정

## 1. 펀드 관련

## (1) 펀드 일반

## ① 외화자산 보관·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 (§49⑤)

-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\*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.

\*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(1차)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(금투업규정에 위임 → 개정추진중)

## ②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확대 (§51②)

- 펀드 포트폴리오(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) 관련 정보교류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-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고,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하겠습니다.

## ③ 이해관계인·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 (§84제4호, §87②)

- 연기금투자플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 행위\*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·관계인수인 판단\*\*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하겠습니다.

\*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고 운용자금을 제공 → 주간 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할 때 판매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판매

\*\* 특정 집합투자업자 펀드의 30% 이상을 판매한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·관계인수인에 해당

#### ④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판단기준 합리화 (§84제5호)

-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\*시 주택도시기금,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하겠습니다.

\*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% 이상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

#### 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 (§87①, §99②, §109①)

-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·투자일임·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.

#### ⑥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개선 (§215, §227①, §234①, §236①, §236의2①, §237①, §239)

- 신탁계약·정관 등에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의 변경사유·절차, 손실·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#### ⑦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 (§260) ⇨ '20.7.1일부터 시행

-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 반영시기를 당일(T일)에서 익영업일(T+1일)로 변경하여 펀드 기준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.

※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(T일) 기준가격 반영

### (2) ETF·인덱스펀드 관련

#### ① ETF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)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 (§80⑬호의3, §252①)

- 일정요건\*을 충족하는 ETF·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.

\* 시장대표지수(코스피, 코스피200, 코스닥150, KRX300, MSCI Korea) 추종펀드로 한정(금투업규정시행세척에 위임 → 개정추진중)

#### ②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(§80⑥)

-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%까지 완화하겠습니다.

### (3) MMF 관련

#### ① MMF(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)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(§87④)

-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\*하겠습니다.

\*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→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·임직원 제재

#### ②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 시가평가 도입 (§260③) ☞ '22.4.1일부터 시행

-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\*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(유예기간 2년)하여 선환매이득(first mover advantage)을 축소하겠습니다.

\* 국채, 통안채 등 안정자산을 30% 이하로 편입한 MMF(금투업규정에 위임 → 개정 추진중)

#### ③ 법인형 MMF 신규설정 규제 완화 (§241②4)

-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(5천억원) 규제를 “장부가평가 MMF”와 “시가평가 MMF”에 각각 별도 적용\*하겠습니다.

\* (예)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였다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 가능

### (4)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관련

#### ①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 (§6③, §14②, §80①2의2)

-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 차익을 해소하겠습니다.

- ① 재간접리츠도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 · 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“투자자 수”를 “1인”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<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>

투자펀드	현 행		개 선	
	리츠	펀드	리츠	펀드
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	1인 간주	1인 간주	1인 간주	1인 간주
재간접리츠	전부 합산	전부 합산	1인 간주	1인 간주

- ②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“자기 재산”의 50%까지, “피투자리츠 지분”의 50%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.

<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>

구 분	현 행		개 선	
	공모리츠	사모리츠	공모리츠	사모리츠
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	50%	10%	50%	50%

<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>

구 분	현 행		개 선	
	공모리츠	사모리츠	공모리츠	사모리츠
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	50%	10%	50%	50%

②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 (§80①5의3)

-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(부동산펀드 등에 80% 초과 투자)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겠습니다.

**2. 투자자문·일임**

① 투자자문·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 (§6의2)

- 투자자문·일임 자산에 발행어음(종합금융투자사업자, 종합금융회사)을 추가하여 투자자문·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하겠습니다.

②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거래허용 (§99②2의5)

-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하겠습니다. (예: 투자자 1인의 A계좌·B계좌 간 거래)

③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 (§99②5)

-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# 3. 기타 개선사항

#### ① 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 (§14의5①)

-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.

#### ②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 (§106②)

-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겠습니다.

### III 향후 일정

-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은 '20.4.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\* 시행령 개정에 따른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안도 '20.4.1일부터 시행 예정

- 다만,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 '20.7.1일,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'22.4.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※ <참고>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## 1. 펀드 관련

## (1) 펀드 일반

## ① 외화자산 보관·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 (§49⑤)

- (현행) 펀드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 수탁회사(1차)에 업무를 위탁
  - 다만, 해당 외국 수탁회사(1차)도 주요국에만 영업망을 보유하여 여타 국가자산은 해당국 수탁기관(2차)에 재위탁 불가피
- ➔ 업무를 위탁·재위탁 받은 자는 금감원 검사 수용의무,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의 위탁 관련 규제가 부과되나, 재위탁을 받은 외국 수탁회사는 이를 준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움
- (개선)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재위탁이 필수적이므로 일정 요건\*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시 위탁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
  - \*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(1차)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(금투업규정에 위임 → 개정추진 중)

## ②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확대 (§51②)

- (현행)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\*는 계열사 및 금융투자업자간 교류를 제한\*\*하나, 판매사에 대해서는 1개월이 경과한 정보제공
  - \* 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
  - \*\* 집합투자업자간 선행·추종매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
- ➔ 정보교류를 1개월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, 그룹차원의 운용전략 수립을 위해 계열 운용사간 정보공유도 필요
- (개선)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
  -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
  -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 허용

③ 이해관계인\* · 관계인수인\*\*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 (§84제4호, §87②)

\* (이해관계인)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및 배우자, 대주주 및 배우자,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배우자,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의 30%이상을 판매한 판매사 등

\*\* (관계인수인) 이해관계인 中 일부 →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의 30%이상을 판매한 판매사,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

○ (현행) 특정 집합투자업자 펀드의 30% 이상을 판매한 판매사\*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재산과의 거래를 제한

\*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· 관계인수인에 해당

- 연기금투자상품의 경우, 주간운용사(집합투자업자)가 하위운용사에 대한 자금위탁 과정\*에서 판매사가 형식적 판매행위 수행

\*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고 운용자금을 제공 →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할 때 판매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판매

➡ 상당수 판매사들이 하위운용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우려

○ (개선) 연기금투자상품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이해관계인 · 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

④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판단기준 합리화 (§84제5호)

○ (현행)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재산의 30% 이상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

- 30% 비율을 산정할 때 연기금투자상품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되나, 주택도시기금, 산재보험기금\* 등은 모두 포함

\* 연기금투자상품과 주택도시기금, 산재보험기금은 정부에서 기금을 운용할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를 각각 선정

○ (개선)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시 주택도시기금,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도 제외



5]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 (§87①, §99②, §109①)

- (현행)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인수일 이후 3개월 내에 펀드·투자일임·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\*

\* 관계인수인과의 이해상충에 따른 펀드 투자자 피해방지

➔ 이 경우,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도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결과 발생

※ 이와 유사한 취지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펀드·투자일임·신탁재산의 경우,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

- (개선)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·투자일임·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

6]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개선 (§215, §227①, §234①, §236①, §236의2①, §237①, §239)

- (현행) 현행법상 펀드 신탁계약(투자신탁)·정관(투자회사) 등에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

- 다만, 구체적 사항(변경사유, 변경절차 등)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펀드가 정관 등에 변경사유 등을 미규정

➔ 합리적 이유 없이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를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발생 우려

- (개선) 신탁계약·정관 등에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의 변경사유·절차, 손실·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

7]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 (안 §260)

- (현행) 펀드 기준가격\*은 원칙적으로 당일 기준으로 반영하나,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자산은 당일 반영이 쉽지 않은 측면

\* 1좌당 순자산가치로서 펀드 매수·매도시 활용되는 가격

- (개선)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 반영시기를 당일(T일)에서 익영업일(T+1일)로 변경(이 경우 기준가격을 T+2일에 공시)

※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(T일) 기준가격 반영

## (2) ETF . 인덱스펀드 관련

### ① ETF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)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 (§80⑬호의3, §252①)

- (현행) 지수를 추종하는 ETF·인덱스펀드\*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편입하는 것을 제한

\* ETF와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나 상장되어 있지 않은 펀드

- ➔ ETF·인덱스펀드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상 지수를 추종해야 하나, 동 규제로 인해 지수 추종이 어려워질 우려\*

\* 실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30%를 넘는데도 불구하고, 인위적으로 30%내로 편입시 추종지수와 괴리 발생

- (개선) 일정요건\*을 충족하는 ETF·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

\* 시장대표지수(코스피, 코스피200, 코스닥150, KRX300, MSCI Korea) 추종 펀드로 한정(금투업규정시행세척에 위임 → 개정추진중)

### ②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(§80⑥)

- (현행) 공모펀드는 파생상품거래 위험평가액 한도\*를 순자산의 100%로 제한하나,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은\*\* ETF는 200%까지 허용

\* 파생상품 매매로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로서 선물, 옵션, 스왑 등 파생상품 종류별로 명목계약금액을 기초로 일정산식을 통해 산출

\*\* 추종지수 변화의 2배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, 투자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일일 가격변동폭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 등

- ➔ ETF와 유사한 인덱스펀드는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% 이내로 제한하여 ETF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측면

- (개선)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%까지 완화

### (3) MMF 관련

#### ① MMF(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)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(§87④)

- (현행) MMF의 운용과정에서 분산투자, 가중평균 잔존만기\* 등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가 부재

\* MMF 집합투자재산 잔여만기를 가중평균한 기간이 일정기간(75일) 이내가 되도록 유지

- (개선)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를 위반\*한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규정\*

\*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→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·임직원 제재

#### ②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 (§260③)

- (현행) 국내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장부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, 시가와외 괴리율을  $\pm 0.5\%$  내로 유지토록 규정

- 다만, 장부가평가로 인한 선환매이득\*(first mover advantage) 유인 존재

\*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

- 특히, 시장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인형 MMF의 경우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

- (개선)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\*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(유예기간 2년)하여 선환매이득(first mover advantage)을 축소

\* 국채, 통안채 등 안정자산을 30% 이하로 편입한 MMF(금투업규정에 위임 → 개정추진 중)

#### ③ 법인형 MMF 신규설정 규제 완화 (§241②4)

- (현행) 기존에 출시한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규 법인형 MMF 설정이 불가능

➔ 향후, 법인형 MMF 상품을 세분화(①장부가, ②시가평가)해 나갈 예정이므로, 법인형 MMF 설정액 규제도 ①, ②에 별도 적용

법인형 MMF 변경안(금투업 규정에 위임 → 개정추진 중)

	대상	기준가격 산정방식	가중평균 잔존만기
(현행)	전체 MMF	장부가평가	75일 이내
(변경)	①국채·통안채 등 30% 초과 편입 MMF	장부가평가	60일 이내
	②국채·통안채 등 30% 이하 편입 MMF	시가평가	120일 이내

- (개선)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(5천억원) 규제를 각각의 상품에 별도 적용\*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\* (예)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였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 가능

**(4)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관련**

- ①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 (§6③, §14②, §80①2의2)

- (현행)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\*와 리츠\*\*는 그 성격이 유사하나, 상호간 투자시 투자자 수, 투자한도에 있어 규제차익 존재

\* 부동산펀드, 특별자산펀드 등에 펀드 재산의 8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

\*\*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(부동산투자회사법)

- ①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\*가 다른 펀드 · 리츠 지분의 10%이상 투자시 “투자자 수” 합산규제 상이

\* 부동산펀드 · 리츠 등에 8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리츠

※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피투자 펀드 · 리츠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나, 재간접리츠는 해당리츠의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

- ②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공모 또는 사모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“투자한도”가 상이

\* 부동산 · 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공모 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가 동일

※ 공모리츠에는 ①자기 재산의 50%, ②피투자리츠 지분의 50%까지 투자가가능하나, 사모리츠에는 각각 10%까지만 투자 가능

- (개선)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

**① 재간접리츠도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·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“1인” 간주**

<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>

투자펀드 \ 피투자펀드	현 행		개 선	
	리츠	펀드	리츠	펀드
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	1인 간주	1인 간주	1인 간주	1인 간주
재간접리츠	전부 합산	전부 합산	<b>1인 간주</b>	<b>1인 간주</b>

**②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“자기 재산”의 50%까지, “피투자리츠 지분”의 50%까지 투자한도 확대**

<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>

구 분	현 행		개 선	
	공모리츠	사모리츠	공모리츠	사모리츠
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	50%	10%	50%	<b>50%</b>

<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>

구 분	현 행		개 선	
	공모리츠	사모리츠	공모리츠	사모리츠
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	50%	10%	50%	<b>50%</b>

**②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 (§80①5의3)**

- (현행)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는 펀드자산의 80%를 초과하여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

- 다만, 동 의무투자비율(80%) 산정시 부동산펀드와 사실상 동일한 리츠(부동산투자회사법)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외

- (개선) 부동산·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(80%)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

## 2. 투자자문 · 일임

### ① 투자자문 · 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 (§6의2)

- (현행) 종합금융투자사업자,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 · 일임 대상자산에 미포함되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
- (개선) 투자자문 · 일임 자산에 발행어음(종합금융투자사업자, 종합금융회사) 추가

### ②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거래허용 (§99②2의5)

- (현행)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도 제한
  - \*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 대해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해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
- (개선)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 (예: 투자자 1인의 A계좌 · B계좌 간 거래)

### ③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 (§99②5)

- (현행)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기금 · 공제회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 허용('19.1월)
  - 다만, 연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우정사업본부는 의결권 위임 미허용
- (개선)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 허용

## 3. 기타 개선사항

### ① 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 (§14의5①)

- (현행)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창업 · 벤처기업에 해당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제한
  - \* 코넥스상장 초기기업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함에도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자금조달에 애로발생
- (개선)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

②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 (§106②)

- **(현행)**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\*에 예치 가능하나, 새마을금고는 제외

\* 은행, 증권금융회사, 상호금융, 우체국, 산림조합 등

- **(개선)**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